

의안번호	2205878
의 퇴 인	박성준의원
회 답 일	2024.12.20.
추 계 번호	24B55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u>난임치료휴가</u>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함	의무규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제1항)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기간. 다만, <u>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함</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한 근로자의 규모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 본문 참조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유산·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대상자의 유산·사산 여부와 이들의 임신 유지 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